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0045	영업표지 : 마라궁 가맹본부 : 마라궁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01.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3.28.	

[마라궁]

정 보 공 개 서

마라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마라궁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0, 1층
-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10-9452-7566
-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010-9452-756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마라궁	[마라궁]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0, 1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2022.09.01.	왕수정	010-9452-7566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84-38-009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아래와 같은 인수·합병에 관하여 해당사실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마라롱	마라궁	2023.02.10.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60-13, 1층 102호	VO THUY HOAN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마라궁')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마라궁]	-
상호	[마라궁] ()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광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	-	-	35,394	-	-
2023	-	-	-	44,408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인 '마라궁'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경영하지 아니한 바, 상기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간	상호 및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왕수정	대표	2020. 01. 01. ~ 2021. 10. 01.	마라궁마라탕 / 대표	매장 운영
			2022. 01. 27. ~ 2022. 06. 30.	마라궁(산격동) / 대표	매장 운영
			2022. 09. 01. ~ 현재	마라궁(신천동) / 대표	매장 운영
			2023. 02. 10. ~ 현재	마라궁 / 대표	가맹사업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	-	-	출원번호: -	-	-
		-	등록번호: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

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해당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해당없음)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마라궁]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마라롱	[마라궁]	VO THUY HOAN	진행 예정 (가맹사업 양수도 : 2023.02.10.)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60-13, 1층 102호
마라궁	[마라궁]	왕수정	진행 예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0, 1층

3. [마라궁]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라궁]	중식	마라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라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1	-	1	1	-	1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마라궁]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마라궁]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개/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마라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마라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도 기준,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한 지출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고객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1599-1900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상기 예치기관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선 당사가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는 **별첨 서식[가맹금예치신청서]**를 귀하께서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미 등록 시 제외), 신분증 및 가맹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상기 예치기관 각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가상계좌를 교부받습니다. 가상계좌를 교부받으시면 창구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가맹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점 별 예치업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는 또한 상기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营业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라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	----	------	------	---------	----

총계	7,700				
가입비	2,200	계약체결 후 1일 내 예치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단,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과 상계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하 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영업개시 이후 미반환
교육비	5,500		교육시작 이전 계약해지 단, 교육시작 이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과 상계 후 반환	이론 및 실습교육에 사용된 비용	교육 시작시 미반환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1일 내 예치	·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채무가 있는 경우 ·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 반환

3) 예치가맹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예치가맹금 합계		12,700
1) 최초 가맹금	가입비	2,200
	교육비	5,500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5,000

4) 그 밖의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49.5㎡(15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48,000		-	-	-
인테리어	(협력업체)	25,000	1,666	개별 계약	개별	점포 및 세부사정에
익스테리어	(협력업체)	3,000	-		계약	

설비/집기	가맹점주 자물	15,000	1,000	내용에 따름	조건에 따름	따라 변동가능
소모품	(협력업체)	3,000	-			
초도물품	가맹본부, 기타 가맹점주 자물	2,000	-			

※ 위 표에 기재된 '지급대상'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형태는 **V. 1.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에어컨, 덕트,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 또는 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CCTV, POS 등의 **비용은 별도**이며, 위 표의 금액은 기준 평수(위 표의 우측 상단 기재사항 참조)에 해당하는 가맹점 오픈 시 예상되는 금액인 바 **실제 소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감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개설 가맹점의 면적(평)당 금이십이만원정(W220,000, 부가세포함)**이 청구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을 적용)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내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내	예치금의 7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전	예치금의 90%

※ 상기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마라궁] 가맹점의 입지선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최종 결정은 가맹점 사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능력이나 상권 영업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자	파산, 개인회생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자	만 19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마라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설비, 집기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 당사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당사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	매월 1일 자동이체	반환불가	관리비로 비용소요	선불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판촉의 성격별로 상이	고지서 수령일부터 2주 내	광고 시행 전	광고 시행 후	상세내용 V.9.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의 성격별로 상이	고지서 수령일부터 2주 내	판촉 시행 전	판촉 시행 후	상세내용 V.9.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필요시 추후 산정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행 전	교육 시행 후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추후지정	협의하여 결정	협의하여 결정	시공 전	시공 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고려하여 협의
시설, 기기 교체, 보수비용	추후지정	협의하여 결정	협의하여 결정	교체, 보수 전	교체, 보수 후	상세내용 VII. 1. 참조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하여 결정	개선 실시 전	개선 실시 후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대금 지급 기일 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단위 : 원)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단위 : %)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취급물품의 내역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장부 및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함과 아울러,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영업표지 및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대체 수단으로서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마라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50일전(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및 양수인의 가맹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 교육기간 감안)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양수인의 가맹자격과 조건에 비추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귀하의 양도요청시점의 계약준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는 귀하의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단, 귀하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의 최소 또는 정지되거나 기존 인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인허가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마라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수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신규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양도 시점에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바와 같은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귀하가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항목당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2조 및 제33조 제7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가. "을"은 "갑"의 상호 및 로고와 "갑"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기타 표시물(메뉴명, 메뉴, 메뉴이미지, 포스터, 썸팅 썸팅 등의 사인물, 웹페이지, 블로그, 지역정보, SNS 등 웹공간의 사용도 포함한 일체 등) 및 모든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즉시 폐기, 처분 및 철거하여야 하며, [마라궁]의 컨셉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외부 인테리어)는 가맹계약 해지 서면 통보 후 45 일 이내에 철거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철거가 확인된 후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상계처리한 후 지급하도록 합니다.
- 나.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 "을"은 제 4 조에서 규정된 가맹점의 영업표시인 [마라궁] 로고의 사용을 금합니다.
- 라. "을"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채무관계(물품대금, 잔존채무, 손해배상 등 상환후)를 정산한 후 정산 잔금을 지급한 후 정산서를 발급하며, 정산 잔금이 반대인 경우에는 "을"이 정산 잔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바.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사.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가맹계약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아. "을"은 메뉴명, 메뉴 이미지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 자. 매장 전화번호의 [마라궁] 상호 및 홍보매체들의 상호 등을 변경 또는 폐업하여야 합니다.
- 차. "을"은 계약의 종료 후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의 동일 사업 또는 경업금지 되는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 및 유사 사업 혹은 유사한(모방) 일부 시스템을 모방하여 경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카.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타. "을"은 "갑"으로부터 얻은 영업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 3 자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파.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 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계약 종료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마라궁]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직접 정하여 조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단위/규격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라궁]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호/이름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마라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마라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의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마라탕	왼쪽에 기재된 품목 외에는 판매 또는 영업할 수 없음	1회 위반 : 1차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 2차 서면시정요구 3회 위반 : 물류 공급 중단 및 최초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후 가맹 계약 해지	-
마라상귀			
참쌀탕수육			
꿔바로우			
딤섬			
추가 소고기			
추가 양고기			
추가 쇼롱바우			
추가 꼬치류			
추가 면류			
추가 찐꽃빵			
멘보샤			
왕만두(고기, 김치)			
참쌀치즈볼			
오뎅튀김			
연유꽃빵튀김			
유티아오튀김			
한국음료			
중국음료			
맥주,소주			
칭따오			
하얼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다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제품	공급받은 상품·제품을 다른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판매불가	1회 위반 :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물류 공급 중단 및 최초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후 가맹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마라탕	1,700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용한 개별 공문 발송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일 기준 권장가격이며,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함
마라상귀	3,000		
참쌀탕수육	12,000		
꺄바로우	(소)10,000 (대)15,000		
딤섬	9,000		
추가 소고기	3,000		
추가 양고기	4,000		
추가 쇼롱바우	4,000		
추가 꼬치류	1,000		
추가 면류	2,000		
추가 찐꽃빵	5,000		
멘보샤	4,000		
왕만두(고기, 김치)	2,000		
참쌀치즈볼	4,000		
오뎅튀김	1,000		
연유꽃빵튀김	5,000		
유태아웃튀김	2,000		
한국음료	2,000		
중국음료	3,000		
맥주,소주	4,000		

청따오	6,000		
하얼빈	5,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마라궁]이 취급하는 마라탕 등 판매업종	[마라궁]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0 km (단,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등 특수상권은 별도 독립적 영업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예외로 함)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 원칙)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자 검토 → 영업지역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

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마라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마라궁]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아래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호 내지 제21호 및 제31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4조 제4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15조 및 기타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16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출을 제3자에게 알려거나, 다른 가맹점의 상황이나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거나, 다른 가맹점 및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발설하는 경우 또는 공문서 상의 내용 이외에 사실무근(근거 없는)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제17조 제4항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직계가족을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지정거래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당사에서 제조하여 공급받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조, 위조, 변조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품목을 공급 또는 판매를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1조 제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2조 제9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7조 제7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9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 내지 제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0조 제7항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25조 제22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제2호	

나. 위의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1조 제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제3항 각호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 제2항 각호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귀하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화, 표준화 및 가맹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중요 영업 방침의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귀사의 동의를 통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5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비, 보증금 등)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內 서면 신청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 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신청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 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신청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 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4) 오픈 시 가맹점운영권 조건

가맹점 운영권은 가맹본부 및 각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오픈일까지 미완납시에는 잠정 보류하며, 이에 대해 가맹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연일 기준으로 만 30 일이 초과하면 가맹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보증금은 상계처리한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없이 자신(직계가족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마라궁]이 취급하는 마라탕 등 판매업종	계약기간 중 경업 불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라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주 1회 휴무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점주 직접근무 여부	직접근무 불가시 대체인력 기준	비고
자율	필수	불가	[마라궁] 가맹점을 2개 이상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사업자인 경우, 직접근무 필수사항 적용 배제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자	비고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가맹사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니다. 공동의 광고 및 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참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광고 실시 1개월 이전에 광고의 성격과 전체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수령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용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 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가맹점사업자 수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 참여여부 결정 → 가맹점부 담액 통지 → 부담금 납입(2주내)	TV, 라디오 등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	-	-
공동 판촉	행사별 상이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및 할인비용부담	판촉계획 공고 → 가맹점 참여여부 결정 → 가맹점부 담액 통지 → 부담금 납입(2주내)	지역 단위 매체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에 참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율(광고: 100분의 50, 판촉: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당사가 광고비를 분담하고 총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광고 시행에 반대하거나 광고비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당사가 판촉비를 분담하고 총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판촉활동 시행에 반대하거나 판촉비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시스템 및 경영 노하우, 조리방법, 점포 내외의 배치, 디자인, 매뉴얼의 내용, 서식, 도안, 간판, 사진, 서비스, 유니폼,接客 방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독특한 특색을 갖고 정착되어 제3자에게 폭넓게 인식되어

당사의 이미지임을 알리는 일체의 요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매출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가맹점의 상황이나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가맹점 및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공문서 상의 내용 이외에 사실무근(근거 없는)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18조(경업 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지정거래처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2,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제3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제32조(가맹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각 호의 내용을 위반할 때 마다 각각 건별로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3조 제7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	제33조 제8항

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9항
제1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가공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5조 제1항의 월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위반일 또는 적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0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증한 구체적인 손해액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에 상당한 경영지원 또는 물품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제33조 제11항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도중 폐업하는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서 아래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갑”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의 위약금은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넘지 아니한다. [산식 : 중도해지 위약금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x 금일백만원(1,000,000원)]	제33조 제12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본 정보공개서의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및 가맹희망자 상담	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 선정 등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개설 승인 및 가맹계약 체결	D-33	
가맹금 예치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D-32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1~28(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및 초도물품 공급	D-26~7(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6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가오픈 및 영업시작	D-3~Day(4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 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 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당사는 [마라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교육 여부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 및 상품(서비스)에 관한 교육	직영점 또는 가맹점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개점 후 교육

당사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 및 관리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교육 여부
수시교육	신메뉴 조리법 및 가맹점 통지사항 교육	직영점 또는 가맹점 실습교육	별도 협의	필수
재교육	가맹점 평가 결과에 따른 가맹점 관리 및 운영 교육	개별교육		필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개별교육		선택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마라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 미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으로 가맹본부 직원의 홀 교육 및 주방 교육에 파견이 있을 경우, 파견비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	3일	5,500 (숙박 및 식대 본인 부담)	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수시교육	별도 협의	교육 사안에 따라 협의	필요시 실시 및 필수 이수
재교육	별도 협의	교육 사안에 따라 협의	필요시 실시 및 필수 이수
특별교육	별도 협의	교육 사안에 따라 협의	필요시 실시 및 선택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및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구	본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10,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4,40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10-9452-75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첨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및 수령확인서

[별첨 3]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 4]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및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